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65
----------	-----

2019년 09월 04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09월 04일 봉양순 의원
2. 회부일자 : 2019년 08월 13일
3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 
【2019년 09월 04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봉양순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 이를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1회항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”을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
  - 출 연 금 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

지원하는 경비

- 기금전출금 :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 
전출하는 경비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

-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경우,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 상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음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□ 예산과목 변경(안 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9조의 제1항제1호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노인복지계정)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	제5조(노인복지계정) ① ----- -----. 1. ----- 기금전출금
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장애인복지 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	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----- -----. 1. ----- 기금전출금
제8조(자활계정) ① 자활계정의 자금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	제8조(자활계정) ① ----- -----. 1. ----- 기금전출금
제9조(주거지원계정) ① 주거지원계정의	제9조(주거지원계정) ① -----

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-----.
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	1. ----- 기금전출금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, 기금의 설립목적은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예산의 지출계획은 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“조직-부문-정책사업-단위사업-세부사업-목” 체계로 작성하나, 기금은 그 특성상 직접사업보다는 재무활동이 대부분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하고 있음.
-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현행조례는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음.
- 행정안전부의 「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목을 정하고 있는 바, 기금의 수입과목은 전입금을 포함한 9개 과목<sup>1)</sup>으로 출연금은 기금의 수입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.
- 따라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.

**기금운용계획 확정 절차 「지방기금법」 제8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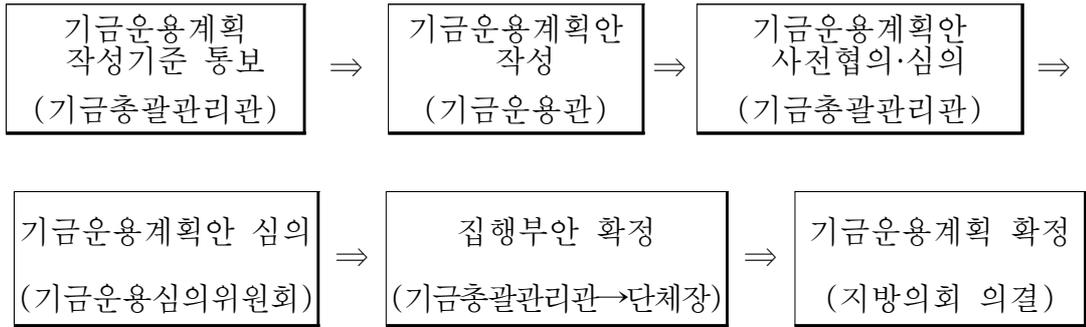
○ 기금운용관\*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작성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

\* 시·도 기금별 담당 실(국)장, 시·군·구 기금별 담당 실(과)장

1) 기금의 수입과목 : ①전입금, ②보조금, ③차입금, ④융자금회수(이자수입포함), ⑤예탁금원금회수, ⑥예치금회수, ⑦예수금, ⑧이자수입, ⑨기타수입

※ 행정안전부, 「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p.299

- 시·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, 시·군·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



### 3 종합 의견

-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되는 바, ①출연금, ②차입금, ③융자금, ④기타 수입금으로 분류됨.
-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‘출입금’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바,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.
- 현행 조례에서 전출금이 아닌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규정은 기금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바,
- 개정안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찬성 9명, 반대 0명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봉양순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6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발 의 자 : 봉양순 의원 (1명)  
찬 성 자 : 이광호, 이영실, 이승미,  
김화숙, 김경영, 이은주,  
송아량, 이병도, 김용연,  
오현정, 김상훈, 김소양,  
김혜련 의원 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 이를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9조의 1호1항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”을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
- 출 연 금 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 - 기금전출금 :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, 제6조제1항제1호,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“출연금”을 “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노인복지계정)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p>	<p>제5조(노인복지계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금전출금</u></p>
<p>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p>	<p>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금전출금</u></p>
<p>제8조(자활계정)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p>	<p>제8조(자활계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금전출금</u></p>
<p>제9조(주거지원계정)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p>	<p>제9조(주거지원계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금전출금</u></p>